

'95년도 정보화관련 법령정비 현황

The Situation of Improvement of Law Related to Information

- 정보화 추진조직 개편, 민원업무 EDI도입 등

신각철

법제처법제연구관
Shin, kak-chual./Ministry of
Legislation,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1. 머리말

정보화관련 법령정비 개요

21세기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세계화·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국민의 창의력 동원, 신기술·신제품개발, 정보능력의 극대화 등을 위한 각종의 시책을 펴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개편을 위한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94년) 연말에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정보화관련 법령정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여 종전에 과기처·상공부·公报처 등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화관련 업무를 총괄·관장하게 되었다. 정보산업계, 언론계 관련 전문가 등이

계속 주장하였던 과제들이 실현되어,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둘째, 21세기 뉴미디어, 멀티미디어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앞으로 21세기는 뉴미디어 영상산업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선도적·전략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제·금융, 영상물의 유통등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산업정보전산망」구축과 EDI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업무 처리등 입법화로 획기적인 전자 문서(Paperless) 시대의 도래가 예고되고 있다.

상공업정보망을 우선 취급하지만, 앞으로

인·허가·신고등 모든 민원업무를 EDI시스템으로 처리한다면, 국가경쟁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부산·목포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민원처리하던 업무를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처리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 물류비용, 교통혼잡, 시간·경비절약, 쓸데없이 행정기관과의 마찰·불신 등도 크게 해소될 것이다.

넷째, 정보화사회 진전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게 우려 되고 있는 금융거래에서 「신용정보」의 체계적관리와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입법을 하였다. 「신용정보전산망」의 구축과 신용정보의 불법이용, 변경, 훼손등의 행위에 무서운 처벌을 하고, 개인에게 열람·정정청구권 인정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등 기본적인권보장을 철저히 하였다.

다섯째, 반도체집적회로에서 「배치설계권」의 이용기회를 확대하였다. 배치설계권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어 권리자에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비상업적 「공공이용」 목적을 위해서는 권리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서도 조정위원회의 재정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입법조치가 선례(先例)가 되어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이용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정보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94. 12. 23, 법제 4,831호)

이번에 정부는 세계화·지방화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혁신적으로 대폭 개편하였다. 종전의 우편·

우편함·우편대체·전파관리 및 전기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체신부의 기능(종전 정부 조직법 제41조)을 「정보통신부」로 부처 명칭을 바꾸고,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통신 업무를 추가하고 총괄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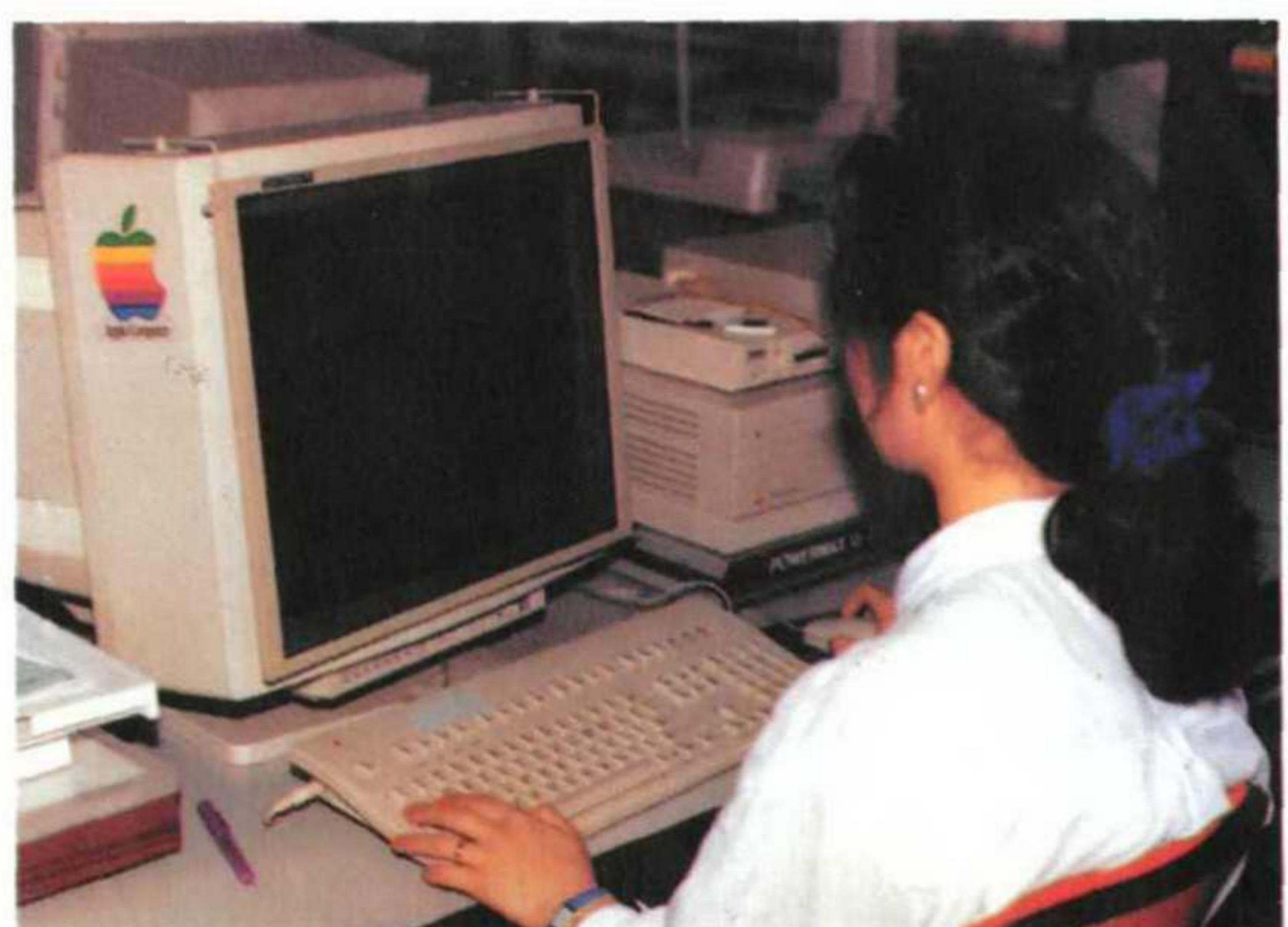
정보통신부는 종전에 공보처·과학기술처 및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관련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종합적인 정보통신산업을 집중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직제 개정 94. 12. 23).

나. 「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정보통신부의 조직으로 정보통신정책실·정보통신지원국·정보통신협력국·전파방송관리국·우정국·체신금융국을 둔다(직제 제4조3항).

(1) 「정보통신정책실」에 정책총괄과, 정보정책과를 두고, 「정책총괄과」에서는 국가사회정보화 추진정책의 종합·조정, 정보통신산업 정착·조정, 투자계획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관리·배분등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정보통신정책과」에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중·장기 기본정책, 정보화시책, 정보통신산업의 구조개편등을 관장한다.



(2) 「정보통신지원국」에 통신기획과, 통신업무과, 부가통신과, 정보통신진흥과를 두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통신기획과」에서는 정보통신사업의 업무영역조정, 사업자 지정·허가, 이용추진, 전문인력 등 양성을 관장한다. 「통신업무과」는 기간통신사업(이동통신제외)의 진흥, 통신사업자간 상호 접속·공동이용, 협회의 지도·감독등 업무를 관장한다. 「부과통신과」에서는 종래에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던(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을 관장하게 되었고,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데이터베이스·뉴미디어서비스의 개발·보급도 여기서 관장한다.

「정보통신진흥과」에서는 종래에 과학기술처와 상공자원부에서 관장하던 정보통신망·전산망등에 접속·사용되는 기기및 관련부품산업을 지도·육성하며, 전자계산조직기술 및 이용기술의 개발업무를 관장한다.

특히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고 있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관장하게 되어 앞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분쟁·조정등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종전에 과학기술처(소프트웨어), 상공부(하드웨어)등으로 분산되어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에 부처간의 업무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사업등 주요 핵심과제 추진에 크게 능률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멀티미디어등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기본시책마련

-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1995. 1. 5, 법률 제4,882호)

가. 입법의 취지: 21세기 뉴미디어시대 대응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뉴미디어영상시대라고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 초고속정보통신등과 함께 뉴미디어 영상이 본격적으로 도래되어 국내외의 경제·산업·문화등 각 방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1세기 뉴미디어영상시대에 대응하여 영상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기본적사항을 법률적 차원에서 정하였다.

나.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의 향상과 영상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적사항을 제정하였다.

(1) 영상물에 대한 법적용어정의

(영상물)이라 함은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정부의 시책 등

정부는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제·세제·금융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사업과 영상물의 유통·배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산업정보전산망」구축등을 통한 EDI체제 도입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94. 12. 22, 법률 제4,8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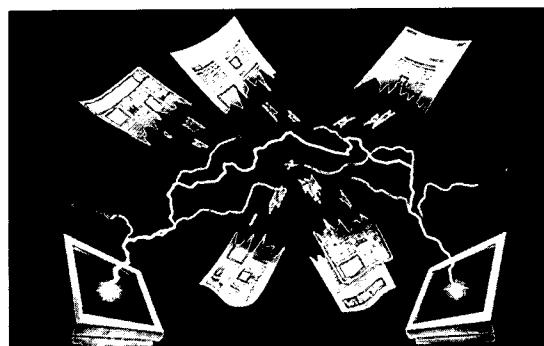
가. 입법의 취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양성, 산업관련정보유통의 촉진, 연구시설의 확충등 종합적인 기술조성사업이 강력한 법적 뒷받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4호로 공포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나. 산업정보전산망 구축과 EDI시스템 도입

이 법률의 특징을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정부는 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통상·무역·상업·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산업정보전산



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7조). 특히 이 법률에서 획기적인 제도도입으로는 그 동안 정보처리업계에서 계속 주장해 오던 인허가 등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겠지만, 민원업무의 EDI체제도 입으로 물류비용절감 기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전자문서교환방식(EDI체제)에 의한 민원업무처리

이 법률에서 전자문서, 전자서명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백히 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EDI체제)에 의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 전자문서·전자서명의 용어정의

전자문서·전자서명(署名)에 대하여 종래의 문서개념으로 본다면,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 전자문서·전자서명에 대하여 용어정의를 하고 법적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무역업무자동화법」에 명문화되었으나 민원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도입된 것은 처음이다).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상호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위의 용어정의로 보아, 전자문서라 함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상호간에 전송·처리·보관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 ② 위의 장치로부터 출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OS(Point of Sales : 판매시점정보 관리),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 EFT(Electronic Funds Transfer: 전자자금이동(은행온라인))등 정보회사 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자정보거래- 페이퍼레스 시스템(paperless system)에 대한

법적효력 인정제도가 이 법률의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2) 민원업무의 EDI 시스템도입

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등의 행위를 산업정보전산망을 구성·운영하는 자(이하 전달사업자라 한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행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 날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앞으로 대통령령이 제정·공포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으나, 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법률을 포함한 시행령·부령등 매우 광범위하며,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정보화 촉진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즉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신고등 절차도 이 법률이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예를들어 본다면, 중소기업진흥관계법령에서 각종의 공장설립등 승인신청서, 허가신청서, 등록·변경등 신고서, 그밖에 신고·신청등 서식이 종래에는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관청에 직접 가지고 가서 신청·신고 또는 허가·승인등을 받는데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였고 번잡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중앙에 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물류비용도 엄청나다고 지적되어 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업정보전산망」에 가입하여 처리할 경우 자기 사무실에서 행정관청 상대의 인허가, 신고·신청등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획기적인 제도의 변혁이라 하겠다.

(3) 전자문서의 효력추정제도

전자문서의 문제점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문서의 토달시기, 문서내용의 진실성등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도달시점과 내용에 대하여 효력을 명확히 하였다.

「제1항의 규정(전자문서로 민원신청)에 의한 전자문서는 수신자(受信者)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되는 때에는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문서등)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민법 제111조). 즉 문서가 상대방의 세력범위(손안에)에 들어와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문서교환방식에서는 종래의 등기우편, 공시송달, 직접전달등의 방식과 달리 도달(到達)을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되는 때로 본다.

물론 도달시점(到達時點)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민원업무에서 승인·신청·신고등의 기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원신청자의 권리·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수신자(해당관청민원담당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되는 때의 시점은 산업정보전산망체제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또한 내용상의 이해다툼의 경우도 산업정보전산망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 없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산업정보전산망 전달사업자의 컴퓨터화일, 즉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메일 센터가 얼마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것이 시스템보안대책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라. 산업정보전산망의 안전성 확보

산업정보전산망의 안전성 확보는 곧 전자문서 교환방식(EDI체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EDI체제는 그 안전성·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래의 문서관리 체제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도 EDI체제에 대한 안전성·신뢰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유지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1) 안전관리조치 강구의무 (법 제8조 3항)

산업정보전산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산업정보전산망의 안전관리와 산업정보의 신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필요한 안전조치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준하여 실시하면 된다. 이에 관해서는 세부사항이 정보통신부(전체신부)고시로 「전산망 안전·신뢰성기준」이 공표된 바 있고, 통상산업부 기타 관련기관에서도 세부적인 안전지침이 제정될 전망이다.

(2) 내용공개의 금지(법 제8조 3항)

산업정보전산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비밀보호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상거래와 관련되는 비밀정보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누출을 철저하게 금지시켜야 산업정보전산망의 신뢰성을 확보시켜 이용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3) 위조·변조·훼손등 금지(법 제8조 4항·5항)

누구든지 산업정보전산망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위조·변조·훼손하거나 위조·변조된 전자문서 또는 산업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산업정보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직무상 비밀누설금지(법 제8조 6항)의 임·

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자의 전자문서로서 업무상 알게된 산업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산업정보에 관한 비밀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일 수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보다 넓은 개념으로 영업비밀이외 법인정보로서 산업상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등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안전관리 침해자에 대한 처벌

이 법률에서 산업정보전산망의 안전관리에 대한 침해자의 벌칙을 다음과 같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 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것을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훼손하거나 산업정보의 비밀을 침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신용정보」의 체계적관리와 사생활 비밀보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95.1.5, 법률 제4,866호)

가. 입법의 취지: 개인의 사생활비밀 보호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거래능력등을 판단하기 위한 신용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전산망」을 구축하고 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정보화사회에서 사생활비밀정보로서 보다 엄격하게 취급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한 오용·남용을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등 국민의 기본적인권을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나.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 100억원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설비와 인력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고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100억원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신용정보업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 ②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한 채권추심업무
 - ④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위의 업무내용에서와 같이 신용정보업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직접 관련된 신용정보를 수집·정리·처리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여, 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 「신용정보전산망」의 구축(법 제17조)

신용정보업자등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정하며, 이 기관에서는 「신용정보공동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라. 신용정보전산망 시스템보안대책

앞에서 밝힌바 있거니와 신용정보는 개인의 사생활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오용·남용될 경우 기본적 인권침해가 크게 우려된다.

이 법률에서 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신뢰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법 제18조~제28조 참조).

- (1)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여 정보주체(개인)의 권리·이익 침해방지
-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침입 등 정보의 변경·훼손·파괴행위에 대한 보안대책의 마련
- (3)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등에 필요 한 내부관리규정 제정
- (4) 신용정보의 종류·이용목적, 제공대상등 공고
- (5) 중요 신용정보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질병·금융관련정보)
- (6) 개인신용정보의 수집목적외 사용의 금지 (법관의 영장, 조세자료제공등 제외)
- (7) 신용정보주체(개인)에 대한 열람·정정청구권 인정

마. 손해배상과 범칙규정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이용자가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1)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신용조사업무를 행하는 자
- (2)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자는 신용정보전산망을 구축한 경우
- (3) 국가기밀·영업비밀, 정치적사상·종교적 신념등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정보를 수집한 자
- (4)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지된 신용정보를 수집한자
- (5)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변경·삭제 기타 이용할 수 없게 한자

6.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이용기회확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개정

(95. 1. 5, 법률 제4,890호)

가. 법률개정의 취지: 배치설계권 이용기회확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은 통상산업부에 설정등록함으로써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법률에서 배치설계권의 이용을 위하여 권리자와 이용자간에 협의를 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 비상사태」등 긴급한 때에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재정신청을 허용하여 배치설계권의 이용기회를 확대하였다.

나. 배치설계권등 공공이용 목적상 이용기회 확대

배치설계의 이용이 비상업적인 「공공목적」의

'95 정보화관련 법제개선 목록

법령명칭	지정일	시행일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정보통신부)	94. 12. 23 (법 4,831호)	94. 12. 23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94. 12. 22 (법 4,824호)	95. 7. 1	산업정보전산망구축, 전자문서에 의한 민 원업무 처리 제도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	94. 12. 22 (법 4,825호)	95. 7. 1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 추진, 기금조 성 지원 등
●영상진흥기본법	95. 1. 5	95. 6. 5	영상물의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 · 금융, 세제상의 지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95. 1. 5 (법 4,866호)	95. 6. 5	신용정보전산망 구축, 신용정보의 안정 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 계에 관한 법률	95. 1. 5 (법 4,890호)	95. 7. 1	배치설계권의 공공목적을 위한 이용확대
●지적법	95. 1. 5 (법 4,869호)	95. 4. 1	지적전산정보자료의 구축과 이용절차에 관하여 규정
●공업발전법	95. 1. 5	95. 7. 1	공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판매 · 제 조부문의 정보처리활동, 공업의 자동화 ·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95. 1. 5	95. 3. 1	자가전기통신설비사용범위확대, 전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 등 행정규제 완화

달성을 위하여 국내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이 「비상업적 공공 목적의 이용」에 이
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설계권자 또는 전용이
용권자의 권리남용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공공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그 이용권의
획득을 위한 번잡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도 앞으로 이와
유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맺음말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에 정보화 추진
과 관련한 새로운 입법이 계속 제정 · 공포되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컴퓨터범죄를 보다 강력
히 처벌하기 위한 「형법」개정안, 상업장부등 문
서를 전자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개
선한 「상법」개정안, 그리고 상업등기등 등기사
무를 EDI시스템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등기사
무개선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비송사건절
차법」개정안등 주요 민 · 형사관계법이 국회에
제출된채 성립을 보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앞으로 상법개정안과 비송사건절차법개정안
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하게 된다면, 은행 ·
공기업, 기타 민간부문의 각종 장부가 전자보존
장치(광파일 시스템, 광테이프등)에 의하여 보
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의 처리 · 보존에 소
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보화 추진관련 신규 입법조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연구도 착실히 진
행되고 있다. **DAC**